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2020. 2. 20.(목)

제34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주요업무 협약체결 보고

환경국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주요업무 협약체결 보고

- 2020. 2. 20.(목) 10:00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 ①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보고
(기후에너지정책과) 3
- ② 2019년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사후보고
(기후에너지정책과) 9

안산시 수소시범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담당 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 (☎8008-6010)	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정운혁 (☎8008-6020)	담당자	황윤주 (☎8008-6008)
----------	-------------------------------	----	------------------------------	-----	---------------------

□ 추진배경

- 도와 안산시가 참여한 국토부 「수소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19.12.29)됨에 따라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분담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 체결을 보고 드림

□ 업무협약(안) 개요

- 대 상 : 도와 안산시를 포함해 총 9개 기관
* 도, 안산시, 안산도시개발(주), (주)포스코건설, (주)KT, (주)KT ds, (주)SPG수소, 한전KPS(주), 안산환경재단
- 협약기간 : 협약 체결(‘20.2.) ~ 사업의 종료일(‘22. 예정) , 총3년
- 주요내용 : 주요 업무협력 내용 및 협력사항 규정
 -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 수립 지원
 - 수소 시범도시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및 규제 개선
 - 수소 생산, 이송 및 활용(연료전지, 충전소 등) 등 전 분야의 국산 기술개발 및 실증
 - 실시간 관제·제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수소통합운영센터 구축 지원
- * ‘20년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 수립 이후 기관별 역할 분담이 확정될 예정임

< 안산시 수소시범도시사업 사업개요 >

- 기 간 : 2020. 1. ~ 2022. 12. (3년간)
- 사 업 비 : 29,983백만원(국비 14,500 / 도비 4,350 시비 10,150 / 민간 983)
- 장 소 : 안산시 안산스마트허브 및 대부도 방아머리 일원
- 주요내용 : 도시 내 발전, 교통, 주거 부분에 걸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수소시범도시를 통해 수소경제 조기 구현 실현

□ 향후계획

- ’20. 2. ~ : 업무협약 체결 및 마스터플랜 수립
- ’21. ~ ’22 : 마스터플랜에 맞춰 시공 → 시운전 → 운영

참고 1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안)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안)

경기도, 안산시, 포스코건설(주), (주)케이티, (주)케이티디에스, (주)SPG수소, 한전KPS(주), 안산도시개발(주), (재)안산환경재단(이하 통칭하여 “협약 당사자”로 함)은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수소 시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안산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하여 선정된 「수소 시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수소 생태계 구축 및 지속가능도시로 발돋움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범위 및 역할) 협약당사자는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구체적인 역할분담은 사후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1.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 수립 지원
2. 수소 시범도시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및 규제 개선
3. 수소 생산, 이송 및 활용 등 전 분야의 국산 기술개발 및 실증
4. 수소 전 주기의 실시간 관제·제어 등을 위한 수소통합운영센터 구축
5.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소인프라 관리·운영 체계 구축 지원
6.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방안 마련 및 민관협의체 구성
7. 안산시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 등

제3조(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협약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하며, 상대방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제5조(법적 구속력) 본 협약의 내용은 제3조(비밀유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적 효력을 갖는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협약당사자는 별도의 세부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6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있어 협약당사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판례에 의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및 해지) ① 본 협약서는 협약당사자들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으로 한다.

② 어느 하나의 협약당사자가 미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서면으로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협약당사자 간 협약 효력은 유효하다.

④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본 협약이 협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9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2월 일



도지사 이 재 명



시장 윤 화 섭



대표이사 한 성 희



대표이사 황 창 규



대표이사 우 정 민



대표이사 이 성 재



사장 김 범 년



대표이사 최 영 길



대표이사 전 준 호

참고 2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 기관별 업무역할(안)

□ 업무협약체결 기관별 업무역할 (예정)

- 가. 공동 :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 수립 지원
- 가. 경기도, 안산시 :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및 규제 개선
- 나. 포스코건설 : 수소 생산(LNG추출/수전해), 이송(파이프라인) 구축
- 다. KT : 수소연료전지 공급·설치
- 라. KT ds :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소인프라 관리·운영 체계 구축
- 마. SPG수소 : 수소충전소 수소 공급
- 바. 한전KPS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관리·운영
- 사. 경기도시공사 : 경기행복주택 건립 및 수소연료전지 설치 지원
- 아. 안산도시개발(주) : 수소생산·공급, 통합운영관리센터 운영
- 자. 안산환경재단 : 에너지자립도시 융합 정책지원 및 사업 운영·관리

□ 향후계획

- 2020년 안산시 수소시범도시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 수립 이후 기관별 구체적인 업무역할이 확정될 예정임

참고 3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 사업계획(안)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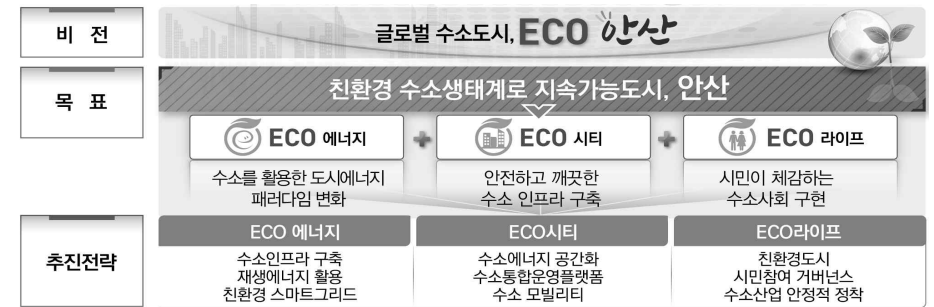
- 사업명 : 안산시 수소 시범도시 사업
- 사업목적 :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로 침체된 안산의 제2의 도약기 구축
- 사업위치 : 안산스마트허브 및 대부도 방아머리 일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2. (3년간)
- 주관기관 : 안산시 (신청자격 : 시·군·구 대상)
- 참여기관 : 경기도, 안산도시개발(주), (주)포스코건설, (주)KT, (주)KT ds, (주)SPG수소, 한전KPS(주), 안산환경재단
- ※ 협력기관 : 경기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태화상운(주), 안산스포츠파크(주), (주)로지스밸리에스캐레이
- 총사업비 : 29,983백만원(국비 14,500 / 도비 4,350 시비 10,150 / 민간 983)
- 주요내용

- ▶ (기본요소) 수소생산(LNG개질)→이송(파이프라인)→사용(주거, 교통)
 - 수소추출기(1,500kg/일) 1기, 파이프라인 8.0km, 연료전지 4개소(440kW*2, 5kW*4)
 - 수소통합운영센터 1개소, 수소충전소 27개소 및 수소버스 2대, 수소자게차 10대 등
- ▶ (특화요소) 조력발전소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
 - 수전해 설비 3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타당성 검토 등

□ 사업추진의 필요성

- 수소사회전환을 위해서 수소시범도시를 통해 세부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
- 안산시 내 수소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제조산업 침체와 노후화 극복
- 본 사업을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한 수소 인프라 구축
- 친환경 수소시범도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수소도시 확대 추진계획

□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수소인프라 구축 계획



기 본 요 소	H ₂ 주거	공동주택형	•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232세대)
		상업건물형	• 제초혁신창업타운(공공+민간), 시화MTV 물류센터 (7층, 반달섬(시화MTV 상업·업무용지 46필지)
	H ₂ 교통	공공시설형	• 공공하수처리장, 복합체육시설(골프장, 수영장 등)
		충전인프라	• 수소충전소 3개소(생산기지, 환승센터, 선착장)
	H ₂ 인프라 관리	대중교통 체계	• 수소버스 2대 운영(71, 71-1번 노선)
		교통수단 확대	• 수소자게차 10대(물류센터), 수소전차 1대(시화호)
특 화 요 소	H ₂ 지역 특화 산업	통합운영센터	• 안산도시개발(주) 유희공간(270㎡)
		수소생산기지	• LNG 추출기 1기(안산도시개발(주) 유희부지)
		파이프라인	• 파이프라인 8.0km 신설(기 구축배관 20km 연계)
		농업	• 대부에너지타운 스마트팜 조성
	지역인프라 연계형	제조업	•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기초소재·부품 산업혁신(그린산업)
		관광업	•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해양·관광 연계
에너지 자급도시	에너지 자급도시	에너지산업	• 조력 등 잉여전력 활용 수전해 수소 생산 실증
		에너지 자급도시	• 조력-수전해-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타당성 검토
에너지 자급도시	에너지 자급도시	에너지 자급도시	• 대송단지 수소산업 확대 및 수소 에너지그리드 구축
		에너지 자급도시	• 대송단지 수소산업 확대 및 수소 에너지그리드 구축

2019년 수소추출시설 구축 협약 체결 사후보고

담당 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 (☎8008-6010)	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정운혁 (☎8008-6020)	담당자	황윤주 (☎8008-6008)
----------	-------------------------------	----	------------------------------	-----	---------------------

□ 추진배경

- 경기도와 평택시 등이 참여한 산업부 **수소추출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12.16)

※ 서울, 대전, 광주, 부산과 선정평가 경쟁, 경기도(평택시) 1개소로 선정

□ 업무협약 개요

- 대 상 : 6개 기관

대상기관	역 할	내 용	비 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	평가 및 관리	산업부 산하기관
경기도	지원기관	지방비 출연, 인허가	
평택시	지원기관	지방비 출연, 인허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관기관	총괄(생산설비 구성, 발주 등)	
한국가스기술공사	참여기관	설계, 시공, 운영, 안전, 유지보수	
평택도시공사	참여기관	부지조성, 충전소연계, 기반시설	

- 협약기간 : '19.12.1 ~ 2021. 3. 31 (16개월)

< 수소추출시설 구축 사업개요 >

- (목 적) 수소공급이 어려운 초기에 공공의 선도적 투자로 수소버스용 수소생산
- (위 치)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30 / 3,000평 규모로 평택시 임대예정
- (사업량) 하루 수소 생산 5ton 규모 * 수소버스기준 약250대 공급가능 규모
- (사업예산) 총 210억원 (국48.5, 도30, 시74.8, 경과원1.87, 평택도시공사30, 가스기술공사25)
- (기대효과) 수소공급가격 하락 기대(현재 8,800원/kg → 5,500원/kg 예상)

□ 향후계획

-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체결('19.12.26)
- 도 투자심사 및 '20년 1회 추경예산 반영('20.~)

참고 1

수소추출시설 협약서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협약서

- 과제명 :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이하 '본건 과제')
- 사 업 기 간 : 2019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86개월)
- 총 수행기간 : 2019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16개월)
- 협 약 기 간 : 2019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16개월)
- 사업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지자체 현금	지자체 현물	민간 현금	민간 현물	계	
4,850,000	10,000,000	480,000	4,800,000	887,000	16,167,000	21,017,000

- 총괄책임자
소속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직위 : 4차산업본부장 성명 : 정 광 용
- 협약대상자

전담기관장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석 영 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경기도지사 이 재 명

기초지방자치단체장 : 평택시장 정 장 선

주관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관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표자) 김 기 준

참여기관 : 평택도시공사
(기관명) 평택도시공사 (대표자) 김 재 수

참여기관 : 한국가스기술공사
(기관명)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표자) 고 영 태

위 과제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장, 주관기관, 참여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목표 및 내용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평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의 수행)

-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관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현금, 현물 기타 제도적 지원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주관기관은 첨부 1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사업 수행 시 수소와 관련된 안전법 준수 및 자체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 및 수행에 대한 안전관리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 ① 전담기관은 전담기관 명의로 개설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 전용 계좌로 정부출연금을 이체한다.

(단위 : 천원)

구분	기관명	협약 구분	정부출연금	사업비관리계좌
주관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자협약	4,850,000	농협은행 / 301-0262-3149-11
참여기관	-	전자협약	-	-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비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지방비 중 현금은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단위: 천원)

지자체	구분	기관명	지방비			지급 시기/금액
			현금	현물	계	
경기도	주관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000,000	-	3,000,000	'20.6월 / 3,000,000(현금)
	참여기관	-	-	-	-	-
	참여기관	-	-	-	-	-
	참여기관	-	-	-	-	-
평택시	주관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7,000,000	480,000	7,480,000	- '20. 3월 / 7,000,000(현금) - '19.12월 / 480,000(현물)
	참여기관	-	-	-	-	-
	참여기관	-	-	-	-	-
	참여기관	-	-	-	-	-

-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각자 부담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단위: 천원)

구분	기관명	민간부담금			지급 시기/금액
		현금	현물	계	
주관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187,000	187,000	- 2019.12.~2021.3월 / 187,000(현물)
참여기관	평택도시공사	2,800,000	200,000	3,000,000	- 2019.12.~2021.3월 / 200,000(현물) - 2019.12월 / 2,800,000(현금)
참여기관	한국가스기술공사	2,000,000	500,000	2,500,000	- 2019.12.~2021.3월 / 500,000(현물) - 2019.12월 / 2,000,000(현금)

- ④ 전담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가. 사업비의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 나.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출연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다.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 라.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마.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전담기관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바. RCMS를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 ⑤ 본 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관기관이 본 협약 체결 시에 제출한 관리계좌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전담기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계좌에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개설하고 사업비(출연금, 민간부담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결제계좌가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RCMS에 등록하여 해당 법인카드를 사업비카드로 만들어야 한다.
- ⑥ 전담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계좌 또는 사업비계좌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한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정기적 또는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주관기관은 이에 동의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본 협약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주관기관에게 지급하며, 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사업비의 신청,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 ① 주관기관은 제13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진도실적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을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 평가 절차 및 기준, 이에 따른 후속절차에 관한 상세 사항은 제13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6조(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

- ① 주관기관은 제13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게 사업비의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전담기관은 정산금을 사업비요령에 정한 바에 따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게 반환하거나 국고 납입처리하여야 한다.
- ④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7조(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소규모 수소추출시설구축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상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협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내용증명 및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기하여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전자문서 방식의 통지, 통고는 다음 어느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한다.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전담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한 발송
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등록한 전담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 ④ 그 밖에 과제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제출, 통지 및 보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협약의 변경)

- ① 당사자들은 제13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 또는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별 실적 또는 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정책의 변경 기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계속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3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에 따른 협약 변경은 제13조에 정한 절차로 같음한다.
- ⑤ 그 밖에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제13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9조(협약의 해약)

- ① 전담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주관기관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주관기관 및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등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 또는 활용하는 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치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라. 특별평가 등으로 문제과제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과제의 평가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여 과제 수행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수행한 사업 관련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차.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카.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타. 총괄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파. 장관이 산업기술정책 수행상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 수소 산업 정책 추진 상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정한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주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기 수령한 국비 중 실제로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담기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정산을 실시하고 국비 잔액을 환수한다.

제10조(사업결과의 활용)

① 주관기관은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결과를 이용하고자 요청한 기업 등에게 사업 참여 또는 사업결과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된 해 다음해부터 5년간 일정양식에 의거 매년 성과활용현황보고를 매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조치)

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가.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평가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다.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라.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바.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 과제 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아. 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사업 외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자.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차.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카.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의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 관련 규정상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하.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너.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참여제한 또는 환수 사유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이의 신청)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본 협약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평가 및 정산결과, 제11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제13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관계법령의 준수)

- ① 지방자치단체장, 주관기관, 참여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 없는 사항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서 제8조에 기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같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 수행 · 결과에 대해 조사 또는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제재부가금)

장관은 총괄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 ① 본 협약 상 지방자치단체장, 주관기관, 참여기관은 본 계약에 의한 소규모 수소추출 시설구축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소규모 수소추출시설구축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의 해석에 따른다.
- ③ 본 사업의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23호)의 「2.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은 반드시 유지 및 이행 되어야 한다.

첨부

1.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사업계획서 1부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사업비 청구서 각 1부
3.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위임장(해당시 제출) 각 1부
4.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5. 지방자치단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서 1부.
6.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1부.
7.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자체보안관리진단표 1부.
8. 전자문서 및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동의서 1부

9. 사업비 통제·관리 및 연구윤리준수 확약서 1부

11.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10.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제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2019 년 12월 26 일

전담기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석 영 철 (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방자치단체장

(기관명) 경기도지사 (대표자) 이 재 명 (인)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기관명) 평택시장 (대표자) 정 장 선 (인)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주관기관

(기관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대표자) 김 기 준 (인)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07

총괄책임자 4차산업본부장 정 광 용 (인)

참여기관장1

(기관명) 평택도시공사 사장 (대표자) 김 재 수 (인)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참여기관책임자 김 창 두 (인)

참여기관장2

(기관명)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대표자) 고 영 태 (인)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참여기관책임자 송 인 근 (인)

[협약 서식 제3-1호]

지방자치단체의 현금·현물납입협약서			
사업명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과제명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주관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총괄책임자	정광용
본 사업의 신청(수행)을 위한 현금·현물부담금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연차별 현금 및 현물 납입(협약)			
(단위: 천원)			
항목	년차	수행기간(2019.12.1. ~ 2021. 3. 31.)	
현금		3,000,000	
현물			
계		3,000,000	
□당해연도 지방비출자 예정일: 2020. 6. . .			
2. 당해연도 현물출연금액 및 내용			
(단위: 천원)			
구분	수행기간(2019.12.1. ~ 2021. 3. 31.)		
인건비	출연금액		
	주요출연내용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출연금액		
	주요출연내용		
연구활동비	출연금액		
	주요출연내용		
간접비	출연금액		
	주요출연내용		
계			
* 별첨: 현물출연 내역 관련 증빙서류			
(지방자치단체명)		(단체장명)	
경기도		이재명	
		(인)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전자협약(전자인증)의 경우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의 "인" 생략 가능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신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광용 4차산업본부장)

(경유)

제목 2019년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신규평가 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1조(신규평가)
 - 나.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5조(신규평가), 제31조(신규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 결과 통보)
 - 다. 신산업기반팀-1783(2019.12.03.), '2019년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신규평가 결과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상기와 관련하여, 동 사업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종합의견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및 협약서류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종합의견서 1부
2. 협약서 및 부대서식 각 1부. 끝.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신원영구원 권태구 임장 김정아 단장 전경 12/18 이장영

협조자

시행 신산업기반팀-1935 (2019. 12. 18.) 접수 ()

우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

전화 02-8009-3786 /전송 02-8009-3789 / tglwon@kiat.or.kr / 비공개(7)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신규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						
접수번호	P075300003	평가일자	2019. 12. 2.(월)			
세부(내역)사업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과제명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					
주관기관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총괄책임자	정광용			
참여기관	평택도시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평택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사후관리	대상(), 비대상()			
평가결과	지원대상					
종합 평가의견	○ 부지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 완료(주민설명회, 주민지원사업 예산 지원 등)되었으며, 전문기업과의 컨소시엄으로 사업 수행 능력 우수 ○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 우수하며, 수소버스 충전소와의 연계방안이 적절하게 제시되었음 ○ 소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토지에 대한 파악이나, 변경검토 필요 ○ 국가산업단지이므로 구축에 문제가 없도록 제반 인허가 준비 필요 ○ 상기의 종합의견에 따라, 추후 과제 최종 확정 시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전담기관의 확인 후 협약을 추진할 것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1조에 따라 평가위원 명단을 통보함 - 박진남, 황정태, 강승규, 구영모, 강경수, 이승훈, 김원식					
조정 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지자체현금	지자체현물	민간현금	민간현물	
	4,850,000	10,000,000	480,000	4,800,000	887,000	21,017,000
구분	신청			조정		
수행기간	2019.12.01 ~ 2021.3.31 (16개월)			2019.12.01 ~ 2021.3.31 (16개월)		